

● 제32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(2025년도 예산안 관련)

2024. 9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075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4. 8. 12.

다. 회 부 일 : 2024. 8. 1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,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출연 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
- 소재지 :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(대방동) 등

- 운영시설 :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

▶ 서울여성플라자 : 지상 5층, 지하 3층(연면적 22,520㎡). 2002.6. 완공

▶ 서울가족플라자 : 지상 2층, 지하 2층(연면적 14,710㎡). 2020.10. 완공



서울여성플라자



서울가족플라자

○ 근거법령

- 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조례 :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기금 및 출연금 등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) 주요사업

○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
○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
○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
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·보급
-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
- 국내외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·교류 및 민간 협력
-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·관리 등

3) '25년 소요예산(안) : 19,396,791천원

4) '25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- 사 업 비 : 8,604,635천원
-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10,792,156천원

5)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,
-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,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, 아동의 권리 보장,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의3(출자·출연의 동의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- 이에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4²⁾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, 결산보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제출되었음.

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개요 및 현황

-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(이하 “재단”)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,

-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2)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출자·출연 사무명 | 2. 출자·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|
| 3. 출자·출연 사무 내용 | 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 |
| 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| 6. 이사회 회의록 |
| 7. 결산 보고서 | 8. 그 밖에 출자·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|
- 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,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- 재단의 일반현황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.

<인력 및 조직 현황>

(단위 : 명/ 2024.5.기준)

구분	계	대표이사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6급 (한시 정원)	기능직
			선임연구위원, 연구위원, 부연구위원, 선임연구원							
정원	171	1	3	6	32	34	26	14	1	60
현원	175	1	2	5	27	27	39	13	1	60

<운영시설 개요>

구분	서울여성플라자		서울가족플라자
위 치	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(대방동)		동작구 노량진로 10(대방동)
규 모 (면 적)	지상 5층, 지하 3층 (연면적 22,520㎡)		지상 2층, 지하 2층 (연면적 14,710㎡)
건립기간	1999.11 ~ 2002.6		2017.12 ~ 2020.10
주요 시설	대관 공간	국제회의장, 아트홀 ‘봄’, 시청각실, 아트컬리지 등	다목적홀, 교육장, 세미나실, 푸드스튜디오, 아동동반공유사무실 등
	사무 공간	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(단체) 사무실, NGO 활동공간, 성평등도서관 등	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사무실(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,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)
	편의 시설	아기쉼터, 휴라운지, 스포츠센터, 주차장 등	엄마아빠VIP존(3호,4호), 서울형 키즈카페, 식당, 커피전문점, 옥상정원(텃밭), 주차장 등
공유재산 운영방식(기간)	관리위탁 (2021.1.1. ~ 2025.12.31.)		관리위탁 (2020.6.1. ~ 2025.5.31.)

<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>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
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	정책개발 및 성과 관리	36개	36개	35개
	정책활용도 제고	303.85%	319.05%	371.43%
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	일·생활균형 컨설팅 기관수	55개	60개	68개
	시민참여 콘텐츠 개발	14건	16건	17건
	성인지 정책 개선 이행률	38.87%	49.80%	58.49%
	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	11건	10건	11건
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	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	16개	21개	42개
	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	2,323명	2,646명	9137명
	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	5,009건	5,389건	2133건
	안심돌봄 체계 구축 연계협력 참여기관	28개	48개	62개

-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중 2023년 ‘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’에 있어 교육대상자가 9천여명으로 전년대비 245% 증가(6,491명)된 사유는 2022년도에 보육현장의 회계교육 강화 요구로 교육이 확대되었고, ‘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’의 경우 감소한 경우 실적에 단순 상담 건수를 제외 하도록 지표를 개선한 결과임.

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추이 및 예산

-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는 2022년까지는 150억 내외였으나, ‘서울시 스톡킹피해자 원스톱센터’ 위탁운영, ‘우먼업 인턴십 사업’, ‘난자동결 지원사업’, ‘우리동네키움센터’, ‘서울형키즈카페’ 등 서울시 시책사업을 재단이 수행하면서 출연금과 총 사업비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.

<최근 5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예산액		비율	
	총사업비	출연금	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	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
2020	18,088	13,859	76.6%	55.7%
2021	20,371	15,030	73.8%	8.4%
2022	25,080	15,465	61.7%	2.9%
2023	33,327	16,847	50.6%	8.9%
2024	41,043	19,123	46.5%	13.5%
총액	137,909	80,324	57.9%	-
평균	27,582	16,065	57.9%	-

- 당초 재단의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원 (14.9%) 증가한 383억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2억7천7백만원(1.6%) 증가된 171억원이었으나,
- 「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」을 통해 전년대비 77억 1천 6백만원 증가(23.2%) 하여 최종 410억 4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22억 7천 7백만원(13.5%) 증가하여 191억원 편성됨.
-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대관수입, 시설이용수입 등 재단 자체 수입(16억 7천만원,15%)과 수탁기관 중 여성능력개발원 신규 운영 (51억 3천만원, 100%) 항목에서 증가하였고,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19억원(86.1%)이 감소함.

<2024년도 세입 예산안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3년 예산(B)	2024년 예산(A)	증감액(C) (A-B)	증감율 (C/B)
합 계		33,326,818	41,043,224	7,716,406	23.2%
출연금수입		16,846,550	19,123,798	2,277,248	13.5%
재단자체수입		11,215,437	12,893,563	1,678,126	15.0%
	사업운영수입	63,398	54,646	8,752	-13.8%
	시설운영수입	970,138	889,571	- 80,567	-8.3%
	기타수입	862,170	1,041,525	179,355	20.8%
	이월잉여금수입	1,484,278	1,836,317	352,039	23.7%
	대행사업수입	7,835,452	9,071,504	1,236,052	15.8%
수탁기관 운영비		5,264,831	9,025,863	3,761,032	71.4%
	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	2,677,918	2,756,784	78,866	2.9%
	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	2,272,485	315,000	-1,957,485	-86.1%
	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	314,428	816,368	501,940	159.6%
	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	-	5,137,711	5,137,711	100.0%

- 재단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수탁기관 운영비를 제외한 고유사업비는 전년대비 31억 8천 2백만원(41.2%) 증가하여 188억 8천 7백만원 이고, 수탁기관 운영비는 37억 6백만원(71.43%) 증가하여 90억 2천 5백만원 임.

<2024년도 세출예산안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3년 예산(B)	2024년 예산(A)	증감액(C) (A-B)	증감율 (D) (C/B)
합 계		33,326,818	41,043,224	7,716,406	23.2%
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		675,638	684,634	8,996	1.3%
	여성가족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	376,388	411,722	35,334	9.4%
	아동보육정책 현장 맞춤형 연구	299,250	272,912	- 26,338	-8.8%
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대응체계 운영 활성화		2,354,500	2,794,032	439,532	18.7%
	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통합운영 및 인프라 지원 강화	609,795	639,350	29,555	4.8%
	피해시민 관점 폭력대응 콘텐츠 개발 및 통합 지원 강화	1,744,705	2,154,682	409,977	23.5%
서울아이 돌봄기관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		2,069,437	2,392,815	323,378	15.6%
	서울시 공보육 추진 지원 강화	735,099	765,000	29,901	4.1%
	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	1,334,338	1,627,815	293,477	22.0%
지속가능한 일·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		5,707,649	6,383,643	675,994	11.8%
	일·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	989,720	1,948,000	958,280	96.8%
	여성경력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	4,717,929	4,435,643	- 282,286	-6.0%
미래지향적 가치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		4,897,867	6,632,201	1,734,334	35.4%
	시민수요 맞춤 양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	3,845,619	5,581,039	1,735,420	45.1%
	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고도화	1,052,248	1,051,162	-1,086	-0.1%
수탁기관 운영비		5,264,831	9,025,863	3,761,032	71.4%
	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	2,677,918	2,756,784	78,866	2.9%
	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	2,272,485	315,000	-1,957,485	-86.1%
	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	314,428	816,368	501,940	159.6%
	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비	-	5,137,711	5,137,711	100.0%
일반관리비		12,356,896	13,130,036	773,140	6.3%

- 재단의 전체 사업별 예산규모는 ‘아동보육정책 현장 맞춤형 연구’, ‘여성경력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’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함.
- 분야별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.⁴⁾
 - 「피해시민 관점 폭력대응 콘텐츠 개발 및 통합 지원 강화」 사업에서 4억 9백만원(23.5%) 증가하여 ▶폭력·예방 대응 콘텐츠 개발(6천 만 원, 120%) ▶(신규) 서울시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관리·운영(1억 9천만원, 78.4%) ▶(신규)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(1억 2천만원) ▶(신규) 2024년 아동·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(5천 만원) 등 이 수탁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음.
 - 「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」 사업에서 2억 9천만원(22.0%) 증가하여 ▶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(5억원, 159.6%) ▶초등돌봄지원단 운영(2천만원, 20%) ▶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(2억 5천만원, 24.7%)이 각각 증액됨.
 - 「일·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」 사업은 9억 5천만원(96.8%) 증가하여 ▶ 양육친화 일·생활 균형 및 협력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(1억 8천만원, 170%) 등이 증액되었고, 수탁사업으로 ▶(신규)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(10억원) ▶(신규)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 보험지원(4억원) ▶(신규)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3.0'(9천 만원) 에 각각 증액됨.
 - 「시민수요 맞춤 양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」 사업에서 17억 3천만원

4) 사업명과 23년과 24년 증감액과 증감율을 기재함. 신규인 경우 별도 표기함.

(45.1%) 증가하여 ▶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시설비가(19억원, 208%) 증액되고 ▶서울여성프라자 수선유지교체비(1억 9천만원, 33.2%,감) ▶서울업마이빠 VIP존 운영 활성화(1억 2천만원, 55.6%,감)등은 각각 감액됨.

- 한편, 수탁기관 운영비는 37억 6천만원(71.4%) 증가하여 ▶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증가(5억원, 159.6%), 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(1억 9천만원, 86.1%,감), 여성능력개발원 신규 위탁(5억원) 으로 변동이 있었음.

3 종합 검토 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르면⁵⁾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동 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「지방재정법」이 규정한 시의회 출연 동의의 대상이며,
- 향후 서울시의 여성 및 아동·가족·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, 재단 설립 고유 목적에 맞게 수

5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반되는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.

- 다만, 동 동의안에 명시된 출연금은 예산편성 이전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시된 예산인 바, 서울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출연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연 규모의 적정성과 수탁사업 증가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문 의 처

한송희 입법조사관 (02-2180-8146)
